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전번호 제2010 - 17 - 074호(사건번호 : 200812조사024)

안 건 명 (주)KT의 IDC 이용자에 대한 전용회선 제공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케이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대표이사 이석채

의결연월일 2010. 3. 30.

주 문

1. 피심인은 엔에이치엔(주)(이하 'NHN')가 요청한 피심인의 목동IDC ~ 현대정보기술 마북 IDC 간 일반전용회선 제공 지연 행위와 피심인의 인터넷망 ~ 현대정보기술 마북IDC 간 인터넷전용회선 제공 거부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전용회선 및 BGP방식의 인터넷전용회선 제공시 부당한 이용차 차별 및 선택권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서비스의 청약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 때,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 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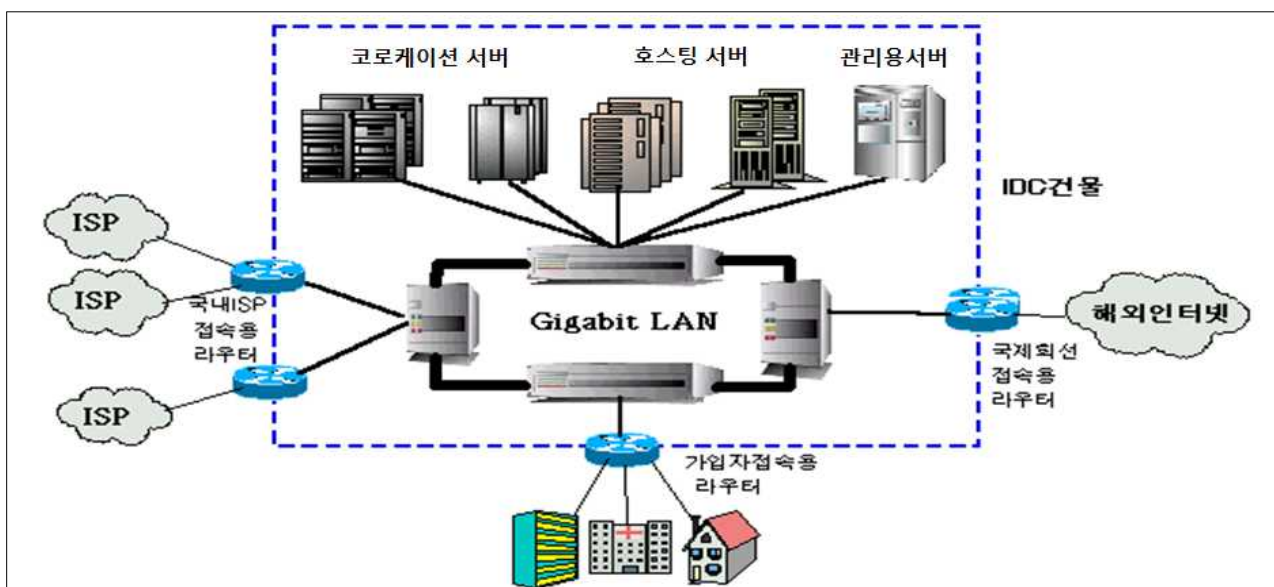
1. 기초사실

가. IDC(Internet Data Center) 서비스 현황

IDC(Internet Data Center, 집적정보통신시설)란 인터넷사업에 필요한 고속 인터넷회선, 전원·항온항습 설비 및 보안·관리시스템 등 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환경을 구축·임대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기간통신업무 외의 전기통신업무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에 해당되어 IDC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통위에 신고(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하여야 한다.

< IDC 개념도 >



IDC 고객이 자체 전산실을 구축할 경우 전산실 공간 확보, 인터넷회선 임차 및 전문인력 고용 등으로 많은 비용이 필요하나, IDC에 입주함으로써 초기비용을 절약하고 핵심사업에 투자가 가능하다.

이러한 IDC의 서비스 유형은 입주고객의 서버임대 유형, 선택 부가서비스 등에 따라 코로케이션(Co-location), 호스팅(Hosting) 등으로 분류된다.

코로케이션 서비스는 고객 소유의 서버를 설치할 수 있는 IDC 서버 공간(床面)과 인터넷접속회선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호스팅은 IDC의 인터넷망과 연결된 IDC 소유의 서버를 임대하는 서비스이다.

데이콤('98년), KT('99) 등 기간통신사업자가 IDC시장에 먼저 진입하고, 이후 대기업 계열 SI(System Integration, 시스템통합)업체와 호스트웨이 등의 독립IDC업체가 시장에 진입하여, '09년 기준 33개사(63개 센터)가 자체 설비·건물을 보유하고 IDC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사업자유형에 따른 IDC의 특징은 다음 표와 같다.

< ISP형 IDC와 독립IDC 비교 >

구분	ISP형 IDC	독립 IDC
사업자	KT, SK브로드밴드, (구)LG데이콤 등 기간통신사업자	삼성네트웍스, LG CNS 등 대기업 SI업체, 호스트웨이 등 IDC전문업체
주고객	공공기관, 금융권, 포털 등	대기업 계열사, 소규모업체
장점	- ISP가 직접 저렴한 인터넷회선 제공 - 인터넷회선 용량 증설 용이 - 전용회선, 전화 등 다른 통신서비스와 일괄 할인 계약 가능	- 유휴 건물을 통한 저렴한 상면 공급 - 복수의 인터넷망과 접속 가능 - IT 아웃소싱 전문기업을 통해 통합솔루션 운영 등 맞춤형 서비스 가능
단점	- 전용건물 건설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면 비용 - 입주한 IDC의 단일 인터넷망만 사용	- 직접 제공 인터넷회선의 부재로 다소 높은 인터넷접속 비용 - 신속한 회선증설이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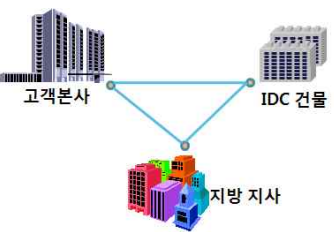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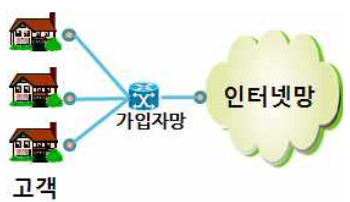
IDC 중 코로케이션 시장 규모는 '02년 906억원, '04년 1,640억원, '07년 2,83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나. 일반·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현황

일반전용회선이란 이용자의 본사-지사, 본사-IDC 등 특정 지점 간을 배타적으로 연결하여 이용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회선으로 기간통신역무인 회선설비임대역무에 해당되며, 주로 기업체, 금융기관 등의 내부통신망 구축에 이용된다.

인터넷전용회선은 일반전용회선을 이용하여 기업에게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회선으로 기간통신역무인 전송역무에 해당되며, 일반고객이 이용하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비해 보안성이 우수한 인터넷접속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된다.

< 전용회선 및 인터넷접속서비스 비교 >

구분	일반전용회선	인터넷전용회선	초고속인터넷
개요도			
역무	회선설비임대역무	전송역무	전송역무
주요고객	기업, 기관	기업, 기관	일반 가정, 소규모 사무실
주 용도	내부망 구성	인터넷접속	인터넷접속
특징	폐쇄망 구성	인터넷접속 보안성 우수	인터넷접속 보안성 취약

전용회선 시장은 '96년까지는 KT와 (구)데이콤의 독점상태였으나, 현재는 다수사업자에 의한 경쟁 중이다.

< 전용회선서비스 사업자 현황 >

구분			업체수	사업자명
일 반 반	국 내	시내	9	(주)케이티, (주)LG데이콤, (주)세종텔레콤, SK브로드밴드(주), (주)이스트넷, (주)LG파워콤, SK네트웍스(주), 드림라인(주), 한국전파기지국(주)
		시외	12	(주)케이티, (주)LG데이콤, (주)세종텔레콤, SK브로드밴드(주), (주)이스트넷, (주)LG파워콤, SK네트웍스(주), 드림라인(주), 한국전파기지국(주), SK텔레콤(주), 한솔아이글로브(주), (주)온세텔레콤
		기타	4	(주)케이티, (주)LG데이콤, (주)LG파워콤, SK브로드밴드(주)
	국제		13	(주)케이티, (주)LG데이콤, (주)세종텔레콤, SK브로드밴드(주), (주)이스트넷, SK텔레콤(주), 한솔아이글로브(주), (주)온세텔레콤, (주)데이콤크로싱, 서울국제전화(주), 삼성네트웍스(주), (주)대한리치, 일진씨투씨(주)
	인터넷		8	(주)케이티, (주)LG데이콤, SK브로드밴드(주), 드림라인(주), SK네트웍스(주), (주)온세텔레콤, (주)세종텔레콤, (주)LG파워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09. 6월)

'08년 말 기준 국내 전용회선 시장규모(일반, 인터넷 모두 포함)는 2조 3,669억원으로 '07년(2조 2,661억원) 대비 근소하게 증가(4.4% ↑)하였다.

KT가 점유율 46.0%(1조 887억원)로 국내 전용회선시장에서 1위 사업자이며 LG데이콤 17.4%(4,120억원), LG파워콤 12.7%(2,999억원) 순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나, 최근 KT의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추세에 있는 반면, 2~3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소폭 증가 추세이다.

다. 피심인 일반현황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로서 허가를 받아 전송역무(시내전화, 인터넷전용회선 등) 및 회선설비임대역무(일반전용회선 등)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용회선서비스 관련해서는 '08년 말 현재 일반전용회선은 37만회선이 제공되어 7,566억원의 매출을 보이고 있으며, 인터넷전용회선은 1만8천회선이 제공되어 2,319억원의 매출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피심인은 부가통신역무인 IDC서비스를 1999년 혜화IDC를 시작으로 '08년 12월 현재 분당, 부산 등 전국적으로 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케이션 서비스의 경우는 '08년 기준 1,240개 고객을 유치하여 1,203억원의 매출을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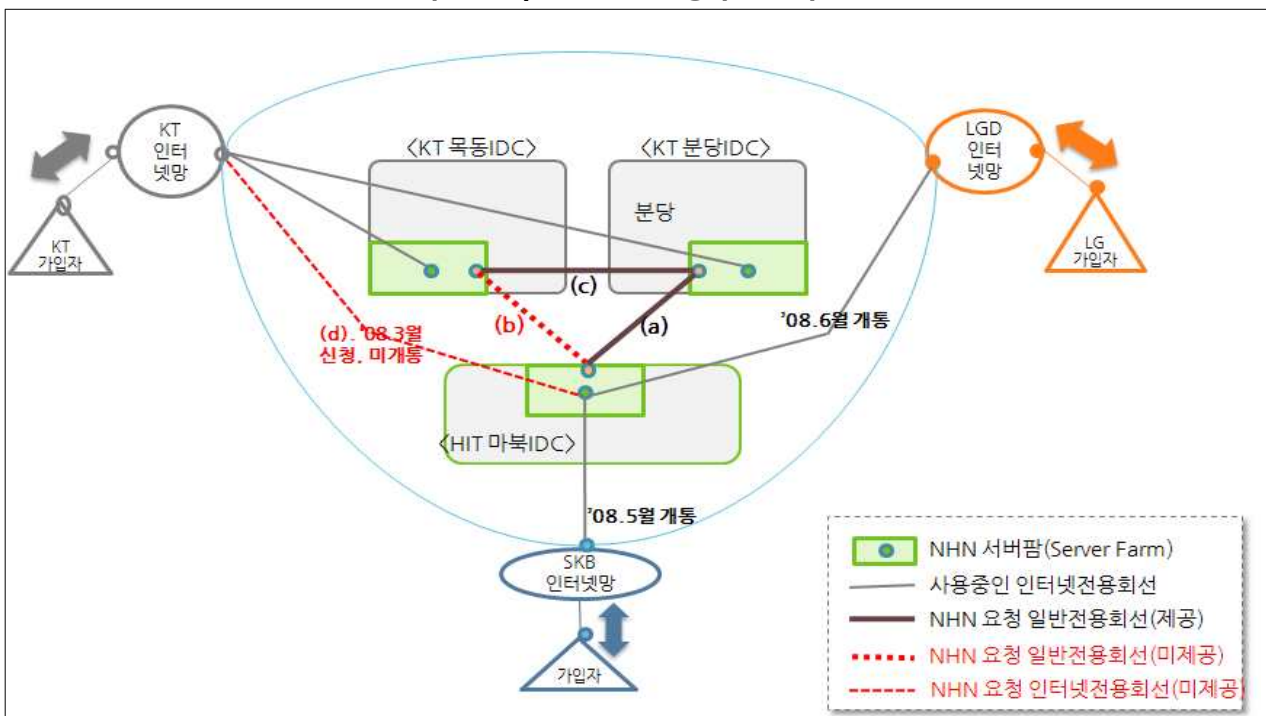
2. 행위사실

가. 개요

NHN은 피심인의 목동·분당 IDC를 이용하던 중 설비공간(床面)의 부족으로 인하여 현대정보기술(HIT)의 마북IDC에 추가 입주('07. 7월)에 따라,

3개 IDC에 분산 또는 이중화되어 있는 내부데이터의 소통을 위하여 일반전용회선 3회선[앞면 개요도 (a), (b) 구간 신규, (c) 구간 용량증설]을 피심인에게 요청하였다('07. 8월).

< 피심인과 NHN 간 망구성 개요도 >



이에 대해 피심인은 피심인 IDC에 위치한 NHN의 데이터 트래픽이 마북IDC를 통해 他인터넷망으로 유출될 경우 피심인 IDC의 인터넷 접속 매출이 감소할 것과 IDC에 보안상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a) 구간 모니터링’ 및 ‘마북IDC에서의 他 인터넷망 연동금지’라는 특수조건을 NHN 요청회선 개통조건으로 부여하였으며(‘07.11월),

특수조건 중 ‘(a)구간 모니터링’ 조건의 이행방식에 대한 양사 의견차*로 인해 NHN이 모니터링 조건을 이행치 않자 특수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10. 3월 현재까지 1회선[(b) 구간]의 개통을 지연중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a)회선 개통, (c)회선 증설은 ‘08. 1월 이행]

* 피심인은 규정되지 않은 트래픽을 차단하는 사전조치인 필터링 방식을, NHN은 소통트래픽을 점검하여 문제발생 시 사후조치하는 통상적인 모니터링 방식을 제시

뿐만 아니라, 피심인이 일반전용회선 이용 계약에 이와 같은 특수조건을 부여한 사례는 본 건이 일반전용회선 37만여 회선 중 유일한 경우인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NHN은 상기 일반전용회선 제공 요청과는 별개로 현대정보기술 마북IDC에서의 인터넷접속을 위하여 피심인에게 BGP방식*의 인터넷전용회선 1회선[(d) 구간] 개통을 요청하였다(‘08. 3월).

* BGP(Border Gateway Protocol) : 독자적인 네트워크 식별번호(AS번호, Autonomous System Number)를 가진 인터넷망간 연동 시 상호간에 라우팅정보(AS번호, IP주소 등)를 주고받는데 필요한 프로토콜로서, 네트워크 간 자율적인 트래픽 소통이 가능

- 일반적인 인터넷회선은 제공ISP로만 트래픽소통이 가능하나, BGP 인터넷회선은 여러개의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와 연결하여 이용자가 트래픽소통 경로를 조절 가능함

이에 대해 피심인은 NHN이 요청한 인터넷전용회선 제공을 위한 회선구성방식과 개통시기 등을 확정하고, 약속된 개통일('08. 4. 12)에 연결상태 확인을 하는 등 개통준비를 완료하였으나, NHN에게 BGP연동 인터넷전용회선을 제공할 경우 NHN이 他ISP 사업자의 망과도 연동하여 각 ISP로 소통되는 인터넷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게 됨으로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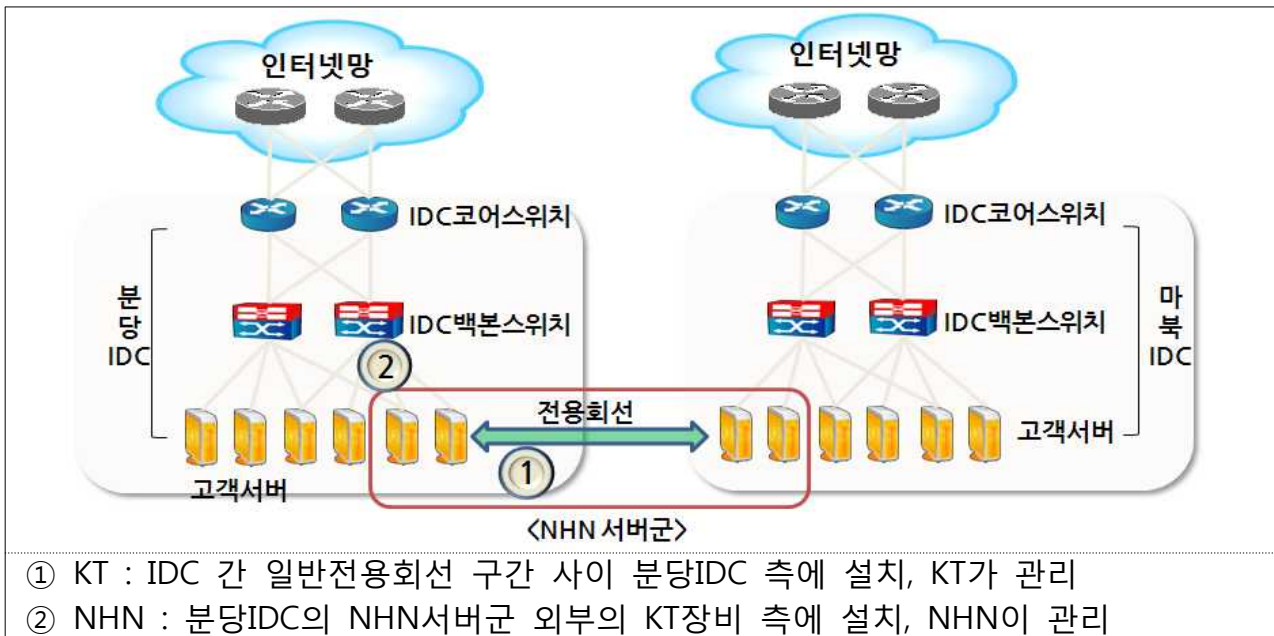
피심인 IDC의 인터넷트래픽 매출이 감소하고, ISP 간 인터넷회선 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등 시장주도권이 포털사업자에 이동할 가능성과 BGP 연동의 위험성을 이유로 마북IDC로의 인터넷 전용회선[(d)구간] 개통을 거부하였음('08. 4월)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이 금융·교육·공공기관 및 제조업체 등 타 이용자에게는 이미 BGP방식의 인터넷전용회선을 제공(221회선, '09.8월 기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 피심인의 NHN 요청 일반전용회선 제공 지연

피심인과 NHN 양사가 합의한 'KT 분당IDC~현대정보기술 마북IDC 회선 구간 모니터링' 특수조건에는 모니터링 방법, 관리 주체 등 세부적인 이행방식이 상술되어 있지 않아 양사간 이행방식에 대한 의견차가 발생하였다('08. 4월).

< 양사의 모니터링 이행방식 의견차('08. 4월)>



그러던 중 피심인은 NHN이 피심인의 인터넷전용회선 대신 타사의 인터넷전용회선을 현대정보기술 마북IDC에 연결하자('08. 5~6월),

그 동안 논의 중이던 모니터링 대신, 일반전용회선 구간에 피심인이 부여한 공인IP(Internet Protocol) 주소와 NHN이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사설IP간의 특정 데이터트래픽만 소통 가능하도록 필터링(Filtering, 사전 차단)하는 방식을 NHN에 제시하였다('08. 7. 8).

※ 모니터링(Monitoring, 감시)은 통상적으로 트래픽의 흐름을 감시하여 이상 트래픽 발생시 사후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며, 필터링은 사전에 규정되지 않는 트래픽의 흐름을 모두 차단하는 방식

※ 모니터링을 필터링으로 변경·제안한 이유(피심인의 주장)

- ㉠ 피심인의 인터넷망과 타사의 인터넷망이 NHN의 일반전용회선을 통해 상호 접속하게 됨에 따라 상호접속기준 위반 가능성
- ㉡ 피심인이 DDoS, 해킹 등에 대한 보안정책을 수행하는 피심인의 IDC 영역이 아닌, IDC 내의 고객 서버와 IDC 외부가 직접 연결(IDC에 뒷문 생성)됨에 따라 IDC와 피심인의 인터넷망의 위해 가능성
- ㉢ 피심인 IDC에 위치한 NHN의 데이터가 피심인의 인터넷망이 아니라 IDC 간 일반전용회선과 마북IDC의 타사 인터넷회선을 통해 소통되면 피심인 IDC의 인터넷접속 매출 감소 우려

그러나, NHN은 목동·분당IDC에서는 피심인이 부여한 공인IP와 사설IP를 사용하나, 마북IDC(NHN 자체 확보 공인IP)와 본사 및 지역 사무소(LG데이콤 등 부여 공인IP)에서는 피심인이 부여하지 않은 공인IP를 사용하고 있어,

피심인이 피심인이 부여한 IP 및 사설 IP 외의 트래픽을 필터링 할 경우 NHN의 내부망 통신이 불가능하며, 사용중인 공인IP를 모두 피심인이 부여하는 IP로 변환하여야 하므로 피심인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이후, NHN은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이 제공하지 않고 있던 피심인의 목동IDC ~ 현대정보기술 마북IDC 간 일반전용회선 개통을 피심인에게 문서로 2회에 걸쳐 요청('08. 10월, 11월)하였으나,

피심인이 양사 간 합의하였던 '분당IDC~마북IDC 간 회선 모니터링' 특수조건을 NHN이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동IDC~마북IDC 간 회선 개통을 '10. 3월 현재까지 지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피심인의 NHN 요청 인터넷전용회선 제공 거부

피심인의 인터넷전용회선 서비스는 고객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온라인, 서면 등을 통해 피심인에게 제출(온라인청약은 일부 생략)하고, 피심인이 고객의 청약이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청약을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이에 따라 NHN은 피심인의 인터넷망 ~ 현대정보기술 마북IDC 간 인터넷전용회선 요청을 이메일로 신청하였으며, 이는 양사의 지속적인 계약관계, 양사가 체결한 협정서('07.10월) 및 피심인의 내부분견을 볼 때 계약 성립의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심인은 NHN의 인터넷전용회선 청약에 대해 검토한 후, NHN의 개통요청일에 인터넷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북IDC로의 전용회선을 개통한 전례가 있는 수원노드(node, 분기점)에 우선 4G회선(물리적 1G×4회선)을 임시개통('08. 4. 12 예정)하고, 추후 영동·혜화노드에 6G회선(물리적 10G×2회선)을 정식개통('08. 6. 10 예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상기 결정에 따라 피심인은 마북IDC에 네트워크장비를 설치하고, 임시개통일('08 4. 12) 오전 연결상태 테스트를 하는 등 개통 절차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전략기획실 주관의 임원회의('08. 4. 10)에서 NHN과 같은 포털사업자에 BGP 연동 인터넷전용회선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심인은 NHN에 'AS¹⁾연동(BGP연동)에 대한 KT정책*과

1) AS(Autonomous System) : 인터넷을 구성하는 네트워크들을 구분하기 위해 개별 네트워크에 부여한 번호(KT-AS4766, NHN-AS23576)

회선 구성을 위한 시설 구축의 어려움'을 이유로 NHN에게 개통요청을 반려해 줄 것을 요구하고('08. 4. 18), 최종개통 불발을 이유로 마북IDC에 설치한 장비반납을 NHN에 요청하였다('08. 4. 25).

* AS연동에 대한 KT 정책 : BGP 연동 인터넷전용회선을 사용했던 일부 고객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적이 있어, 1G 용량 이상의 BGP 연동 인터넷전용회선은 일반적인 노드가 아닌 인터넷교환노드(센터노드)에 수용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하나, KT 내부적으로 위 정책을 기안한 문서는 없음을 확인

피심인은 상기 정책에 따라 NHN 인터넷전용회선을 수원노드에 임시 개통하는 대신, 인터넷교환노드(혜화·구로)에 수용하기로 변경함에 따라 제공단가가 상승하고 개통일정 준수가 어려워져 청약을 반려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심인의 전략기획실에서 작성한 'KT BGP 정책안'('08. 5월)에 대학 등 기관에만 BGP를 허용하고 포털에는 BGP를 불허하는 것이 '08. 5월 현재 정책이며, 향후에도 이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피심인의 BGP 연동 인터넷전용회선 221개 중 단 1회선도 포털, 게임 등 인터넷업체에 제공되지 않았음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또한, 피심인이 NHN의 BGP연동 인터넷전용회선 제공을 거부한 실질적인 이유는 매출액의 감소 우려 때문이었음을 피심인 내부 검토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

3. 위법성 판단

가. 피심인의 일반전용회선 제공 거부 관련

피심인이 일반전용회선을 제공하면서 약관상 근거가 없는 특수조건

(타사 인터넷망 연동 불허, 특정 구간의 모니터링 허용)을 NHN에게만 부여하여 전용회선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피심인의 목동 IDC와 현대정보기술 마북 IDC간 일반전용회선 제공을 거부한 행위와 관련,

피심인은 전용회선 이용약관에는 NHN이 요청한 상품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고, NHN은 일반 이용자와 다른 지위에 있으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특수조건을 자유로이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제1항은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역무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하여 방통위에 신고토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그 역무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해당 서비스가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특정 이용자가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개연성만으로 사업자가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이용조건을 부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심인은 역무 침해·무허가 역무 제공·상호접속 협정 위반·기본 상품설계에 부합되지 않는 망 이용방식 등의 사유를 들어 해당 특수조건(전용회선을 통한 피심인 이외의 타사 인터넷망 접속 불허)이 약관상 명시되지 않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기타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당연히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주장하나,

피심인의 이러한 주장은 본 건 일반전용회선과 인터넷전용회선이 직결되어 사실상 인터넷전용회선의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 바,

NHN의 일반전용회선은 NHN의 서버간 데이터 전송의 용도로만

사용될 뿐이고, NHN의 인터넷전용회선과 본 건 일반전용회선이 직결되어 해당 데이터가 변형없이 전송되는 것이 아니어서 본 건 전용회선이 인터넷전용회선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심인의 본 건 주장은 그 전제가 사실과 다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피심인은 ‘모니터링’이라는 조건에 NHN이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제공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심인이 합의 이후 주장한 특수조건의 취지는 트래픽의 이상 여부를 점검하는 일반적 의미의 모니터링이 아니라 NHN이 운영하는 서버간의 내부데이터 소통을 방해하는 “필터링”을 의미하는 것으로,

NHN이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합의 당시에는 이를 필터링이 아닌 일반적인 모니터링의 의미로 받아들였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NHN이 피심인의 “필터링”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NHN이 양사간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양사가 “필터링”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약관상 근거 없는 특수조건 부여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행위의 위법성이 당연히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피심인은 이러한 특수조건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트래픽 조절 등 망제공사업자의 자율성이 완전히 박탈될 우려가 있고, 본 건 제공 거부로 인하여 NHN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특수조건 부여 및 제공 거부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망제공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이용약관에 반영하여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하는 정상적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 이용자에게만 선별적으로 특수조건을 부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의 취지는 통신시장의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 “특정 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자 이익 저해는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인정되므로 NHN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위법성이 당연히 조각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피심인의 이용약관상 이러한 특수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특수조건을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일반전용회선 계약 37만건 중 본 건이 유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은 전기통신설비를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제안하고,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제안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별표3]Ⅳ 제5호 및 제7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 ①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이용약관과는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1항 [별표3]**

IV(이용자 이익 침해) 법 제36조의3제1항제4호 중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5. 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전기통신역무의 요금, 번호 및 전기통신설비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7. 다른 전기통신역무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나. 피심인의 인터넷전용회선 제공 거부 관련

피심인은 자사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상 설비 여유 부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 회선구성을 위한 시설구축의 어려움 등이 있어 개통요청을 반려하였다고 주장하나,

※ **피심인의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상 승낙 유보 사유**

1. 타인명의를 사용하였거나 허위 서류를 첨부한 경우
2. 설치장소가 위법 건축물이거나 구내통신설비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3. KT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4.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피심인의 수원노드와 마북IDC 간에 기존에 구축한 회선이 존재하여 설비여유가 있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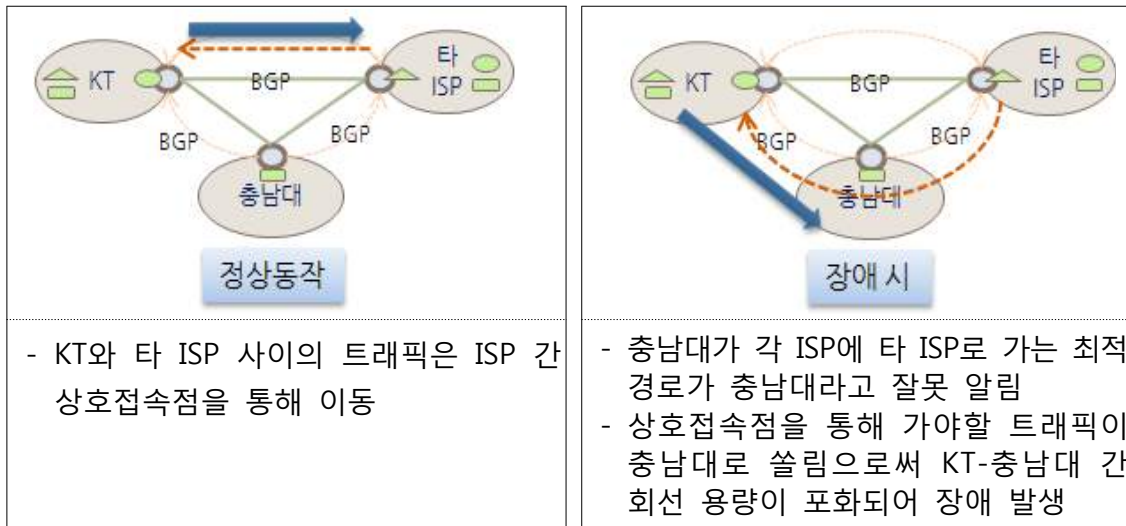
긴급개통일('08.4월)에 양사 실무자 간 개통 테스트를 하는 등 개통절차를 사실상 완료하는 등 기술상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본 건이 이용약관상 승낙 유보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심인은 BGP연동을 허용할 경우 자사 인터넷전용회선에 장애가 발생한 전례가 있고, 이러한 장애가 다시 발생될 수 있어 개통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 충남대학교 BGP장애 사례

- o 피심인이 BGP정책의 필요근거로 제시한 충남대학교의 BGP장애는 충남대와 피심인의 라우팅운영 미숙으로 ISP 간 상호접속을 통해 유동되어야 하는 인터넷트래픽이 충남대의 회선을 통과함으로써 인터넷접속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사건



과거 문제가 되었던 사항은 AS를 보유한 인터넷망간 BGP 정보 교환시 라우팅경로 점검(AS path filter, Prefix filter)등의 방식을 통해 사전에 예방 가능한 장애로서,

현재 각 ISP는 인터넷전용회선을 BGP로 연동할 때 명령어 적용, 장비 인증 등 설정을 하고 있어 동일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하였다.

※ 실제로 NHN도 현재 마북 IDC의 LG데이콤,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전용회선 연동시 Prefix Filter 등을 적용하여 문제없이 운영 중임

따라서, 피심인이 NHN의 BGP 연동 목적의 인터넷전용회선 제공 요청을 거부한 행위와 관련,

피심인이 이미 금융기관, 교육기관, 공공기관,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총 221회선('09.8월 기준)에 대해 BGP 연동을 제공하고

있는 점, BGP 연동시 망의 안정성에 위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합리적
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은 전기통신설비를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제안하고,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제안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별표3]IV 제5호 및 제7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시정조치 명령

가. 금지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의거 엔에이치엔(주)가
요청한 피심인의 목동IDC ~ 현대정보기술 마북 IDC 간 일반전용회선을
제공 지연한 행위와 피심인의 인터넷망 ~ 현대정보기술 마북IDC 간
인터넷전용회선을 제공 거부한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나.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제1항제9호에 의거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전용회선 및 BGP방식의 인터넷전용회선
제공시 부당한 이용차 차별 및 선택권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서비스 청약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 때,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제1항제10호 및 동 법 시행령 제44조

제2호에 의거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법률 제8871호, 2008.2.29. 시행]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6. 결론

상기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 법 제37조 및 제37조의2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0. 3. 30.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위 원 장	최 시 중 (인)
	부위원장	이 경 자 (인)
	위 원	송 도 균 (인)
	위 원	형 태 근 (인)